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소식지

두 엄 누 리

www.duemnuri.com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0-1 국제빌딩 301호 02-522-4260
(사)한국부산물비료협회 소식지 제2호 2003년 5월 17일

이는 허가를 받은지 이제 2년차인 우리협회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그렇다고 생각되나 각 도지회로 결성된 우리협회의 특성으로 보니 업계에 기여하는 공헌도로 보니 너무나 저조한 실정이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도 비료담당자나 농협지역본부 담당자 및 신규 생산업 등록 업체에게 계속하여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그동안 불편하였던 협회 명칭도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회원자격도 변경되었으니 각 도 지회에서는 평상시 주위에 업체에 홍보하여 회원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농협지정 우수생산업체 선정

농협중앙회는 보조비료 참여 지정업체 중 최근 3년간 연간 판매액 1억원 이상 실적이 있고 또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생산업체 지정을 해 주고 있다.

우수생산업체로 지정받았을 경우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 포장지 곁면에 일반지정업체는 그 표기를 할 수 없으나 우수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농협 납품 우수생산업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대상업체 신청을 받고 있다.

올 대상업체 기준은 작년과 동일 최근 3년간 연간 판매실적 1억원 이상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어야하고 지난 년말 비료 공정규격에 그린퇴비항목이 추가 됨에 따라 그린퇴비등록을 받은 업체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대상업체는 경기 가평배작목반 경북 영창영농조합, 상공원예영농조합, 충북 연우회영농조합 등 5개 업체이며 이업들은 빠른 시일 이내에 그린퇴비 등록을 마친 후 협회로 연락주기 바라며 그 외 대상이 되는 업체는 협회로 연락 등록 신청을 하여주기 바란다.

◆ 협회 홈페이지 제작

지난 3월부터 협회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다.

우리 홈페이지의 주소는 두엄나라 나는 뜻으로 duemnuri.com으로 정하였다.

조상의 얼이 듬뿍 담긴 거름 두 엄, 두엄 같은 좋은 비료를 만들고 우리나라농업에 두엄같은 존재가 되고자 정한이름이다.

언젠가 남해화학의 광고중에 『두엄만한 비료는 없겠으나..』라는 광고 문구를 본 기억이 있다.

화학비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 정말 두엄 같은 비료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 홈페이지에 올릴 각 업체에 홍보물을 협회사무실로 보내주기 바란다.

아니면, 이 홈페이지 때문에 협회에서 디지털 카메라도 구입을 했으므로 연락을 주면 방문해서 홍보물을 제작 할 생각이다.

업계 전체를 대변할 우리의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갖어주었으면 한다.

◆부산물비료 공정규격 변경

농촌진흥청은 작년 12월31일자로 비료 공정규격을 변경 공포하였다.

이번에 변경된 공정규격에는 퇴비의 등급화로 1급퇴비인 그린퇴비를 비종에 추가 시켰고 그간 말이 많았던 가축분뇨 발효액비를 부산물비료에 추가 시켰다.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표로 표시 하였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규격	비 고
그린(1급))퇴비 (신설 :‘02 12.3 1)	유기물 40	비 소 25mg/kg 카드뮴 2.5mg/kg 수 은 1mg/kg 납 75mg/kg 크 름 150mg/kg 구 리 200mg/kg 니 켈 25mg/kg 아 연 500mg/kg	○ 유기물대 질소의 비 40이하 인 것 ○ 염분(NaCl) 1 0%이하 ○ 수분(H ₂ O) 45%이하	1.<별표1>의 1.사용 가능한 원료 사용 2.부숙도 측정을 위하여 자가발열온도 측정법 또는 유식물검정법을 병 행하여 검토할 수 있다.
퇴비	유기물 25	비 소 50mg/kg 카드뮴 5mg/kg 수 은 2mg/kg 납 150mg/kg 크 름 300mg/kg 구 리 300mg/kg 니 켈 50mg/kg 아 연 900mg/kg (개정 ‘02.1.31)	○ 유기물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것 ○ 염분(NaCl) 1.0%이하 ○ 수분(H ₂ O) 50%이하 (개정 ‘02.1.31)	퇴비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과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은 별표1과 같다. (개정 ‘97. 7. 19)
부숙거	유기물 25	비 소 50mg/kg 카드뮴 5mg/kg 수 은 2mg/kg 납 150mg/kg 크 름 300mg/kg 구 리 500mg/kg (개정 ‘96. 7. 4)	유기물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것	겨울 70%이상 사용한 것 (개정 ‘97. 7. 19)

두 엄 누 리

•비료관리법개정 공포(시행 2003년 6월1일부터)

그동안 무허가 비료의 난립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 처리 부산물등이 대량으로 유통되어 우리 부산물 비료 업계의 유통질서를 크게 어지러워 왔음은 물론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상품으로 인하여 2차 토양오염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방치되어 왔었다.

본 협회에서도 지난년말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 비료를 단속하여 각 관활 관청에 고발하였으나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생산업자의 한계를 생산 판매하는 자에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하는자”로 바뀌게 되었다.

이로인해 음식물스레기로 제조된 부산물비료중 무상으로 유통·공급(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 처리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도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비료산업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로 제조한 비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최근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 그 부산물이 축산농가의 축분처리하는데 수분 조절재 및 부자재로 써여지고 있어 실제 비료에 품질관리에 어느 만큼 기여 할지는 확실치 않다

그간 협회에서는 여러차례 대량 유통되는 무허가 비료업자의 단속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나 소단위 축산농가의 보호차원에서 만들어진 법 예외 규정 (1일 1.5톤이하의 비료생산)으로 인하여 그 방법 찾기가 어려운 상태다.

한 철이면 1천차이상이나 판매하는 무허가 업자들도 단속에 나서 보면 예외규정에 적용되는 소단위 축산농가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이라며 빠져 나가고 있어 단속에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본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요번 비료관리법개정의 후속조치로 벌크판매도 반드시 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할 것과 법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소단위 농가에 생산물도 반드시 허가업체를 통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농협회 명칭변경

본 협회 명칭이 사단법인 전국농업
인축분퇴비장연합회에서 사단법인
한국 부산물비료협회로 변경

작년 년 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이 통과된
후 몇차례 이사회를 개최하여 논
의한 결과 한국부산물비료협회로
결정되었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관내용중 회원의 자격등 일
부내용이 변경되게 되었다.

그동안 명칭관계로 대외적으로
생산자 단체로서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회원
확보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해결되
게 되었다.

(정관변경허가 2003년 4월 14
일. 2003년 4월 30일 법원등기완
료)

농협회사무국 여직원 변동

지난 1월부터 근무하던 김은숙씨
가 부모님의 숙환으로 갑작스럽게
퇴직

지난 5월2일 김은숙씨의 퇴직으로
인해 인터넷모집광고를 통해 새로운
직원이 근무하게 되었다

이름은 이 영아이며 오랜 동안 농
어촌 진흥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
고 농림부장관 표창까지 받은 경력이
있어 채용(5월 14일부터 근무)

농협납품 03년 신규지정 업체 추천 및 우수생산업체 지정안내

본 협회는 매년 봄, 가을 2차례
에 걸쳐 농협중앙회에 정부 보조사
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신규『농협
지정 부산물비료(퇴비)생산업체』
를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회원에 가입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류를 받아 협회 사무국에서
생산시설 및 품질에 관한 검증을
거쳐 농협중앙회에 추천하게 되며
올 상반기에 추천한 업체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대림비료 대표 박 종웅

경북

비랑영농 대표 황 병하
창성영농 대표 박 창언

경남

서진바이오텍 대표 김 진세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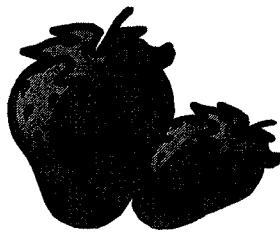
옥전영농 대표 김 병용이상 5개업
체

이 업무는 유기비료공협동조합과
같이 진행되는데 올 봄 유기비료조
합에서 추천한 업체는 모두 14개
업체에 달한다.

우리 협회는 업계 후발 단체로
운영이 어려운 형편에 신규회원마
저도 영입이 저조하여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2. 분석후 사용 가능한 물질

원 료 범 위	비 고
1 농림부산물류(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이탄, 토탄, 갈탄, 깻묵류 및 기타 유사물질 포함)	○ 폐인트나 락카가 처리된 폐목재 제외
2. 수산부산물(어분, 어목찌꺼기, 해초찌꺼기, 계껍질, 해산물 도매 및 소매장 부산물 포함)	○ 폐수처리오니 제외
3 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인분뇨 처리잔사, 구비, 우분뇨, 돈분뇨, 계분, 기타 동물의 분뇨)	
4. 음식물쓰레기	
5 식료품 제조업·유통업 또는 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도축, 고기가공 및 저장, 낙농업, 파실 및 야채, 통조림 및 저장가공, 동식물유지류 빵제품 및 국수, 설탕 및 과자, 배합사료, 조미료, 두부 및 기타)	○ 폐수처리오니 제외 (개정 '02.1.31)
6 음료품 및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주정, 소주, 인삼주, 중류주, 약주 및 탁주, 청주, 포도주, 맥주, 청량음료, 담배제조업 및 기타)	○ 폐수처리오니 제외 (개정 . '02.1.31)



3. 사용불가능한원료

원 료 별 위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및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02. 12. 31 개정 "제약포함" 삭제)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3. 제1차 금속 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4. 조립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5. 석유제조 및 정제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6. 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7.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8. 육상운수 및 자동차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9. 수선업 및 세탁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10. 인쇄, 출판 및 사진처리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11. 전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12. 도시 및 공단지역 폐수처리오니13. 기타 사용불가로 명시된 폐기물과 유사한 물질도 포함	

◇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규격	비 고
가축분뇨발효비료(액) ('02 12 31 신설)	질소전량 0.1	비 소 5mg/kg 카드뮴 0.5mg/kg 수 은 0.2mg/kg 납 15mg/kg 크 름 30mg/kg 구 리 30mg/kg 아 연 90mg/kg 니 켈 5mg/kg	○ 병원성미생물 Fecal E Coli 1,000cfu (MPN/ml total liquid) Salmonella 3이하 (MPN/4ml total liquid) ○ 염분(NaCl) . 0.3%이하 ○ 수분함량 95% 이상 ○ 냄새 의취강도(관능법) 2수준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발생 제한 규정에 준함	1. 저장기간 및 시설 호기성발효의 경우 6개월 이상 저장 및 폐기조교반장치 저 장시설 200t 이상 설치 2. 살포량 연간 질소 25kg/10a이하 3. 살포시기 . 겨울철 및 장마기 제한 4. 살포지 : 민가에서 200m 이상 격리지역 5. 농경지밖으로 유출금 지
건 계 분	유기물 20	비 소 50mg/kg 카드뮴 5mg/kg 수 은 2mg/kg 납 150mg/kg 크 름 300mg/kg 구 리 500mg/kg (개정 `96. 7. 4)	염산불용해물 30%이하 인 것	계분을 단순건조한 것 (개정 `97.7.19)
건조축산폐기물	유기물 25	비 소 50mg/kg 카드뮴 5mg/kg 수 은 2mg/kg 납 150mg/kg 크 름 300mg/kg 구 리 500mg/kg (개정 `96. 7. 4)	유기물 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것	건조축산폐기물에 한함 (개정.'00.4.10)
부숙왕겨 또는 부숙톱밥 (개정 02.1.31)	유기물 30	비 소 50mg/kg 카드뮴 5mg/kg 수 은 2mg/kg 납 150mg/kg 크 름 300mg/kg 구 리 500mg/kg (개정 `96. 7. 4)	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하 인 것	왕겨 또는 톱밥을 70%이상 사용한 것 (개정 `02.1.31)
토양미생물제제(미생물효소) 및 토양활성제제 비료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연구기관에 서 재배시기 또는 지역 을 달리하여 2번 이상 의 시험결과에 따라 등 록	미생물의 속명·종명 을 등록증·포장대에 기재하고, 보관조건, 유통기간, 안전관리 상 주의사항을 포장 대에 표기한다 (개정 '00.4.10)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과 사용 불가능한 물질

1. 사용가능한 물질

원료 범위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수산포함)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하오니음료품 및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오니종이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읍·면단위 농어촌지역 생활하수오니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02. 12. 31 개정)o 물리적추출, 발효 단순혼합, 무균조작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화장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02. 12. 31 개정)기타 비료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o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시한 폐수처리공정에 첨가되는 물질의 종류 특성과 오니중의 이화학적 성분, 재료의 토양오염 및 분해성의 자료를 농업과학기술원장이 검토한 후 지정 고시o 합성 및 특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는 제외 ('02. 12. 31 개정)

